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1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이성권 · 강명구 · 김용태
서천호 · 조승환 · 이헌승
조은희 · 우재준 · 신성범
이만희 · 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2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특례) 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의 비율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는 1만분의 2,016으로, 2028년에는 1만분의 2,108으로 하고, 2029년부터 1만분의 2,200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 ----- ----- ----- ----- ----- <u>1만</u> <u>분의 2,200</u> -----
2. ~ 6. (생략) ②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